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14.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92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윤석민 의원 등 18인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윤석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현행 조례에서 중복 수령을 제한함에 따라 유족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서적 예우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망일시금 수령 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제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개정)
-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여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윤석민위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상의 사망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에게 강남구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을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의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사망위로금 중복 지원 제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먼저,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 강남구 사망위로금에 대해 살펴보면,
 - (사망일시금)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 종결급부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금액은 보훈자격별 차이가 있음.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별	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1,704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1,444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1,127
2. 재일학도의용군인	1,127
3.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1,127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8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	3,268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3,208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704
	4. 건국포장 서훈자	1,208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127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2·3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2,26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2,20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1,989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1,127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127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1,1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별	지급액(천원)
1. 재해부상군경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1,704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1,444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1,127
2.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1,127

- (사망위로금) 우리구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강남구 사망위로금 지급 제외(현행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제10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

○ 이에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강남구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 강남구 사망위로금의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를 사망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는 자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만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외 지급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만 중복 지원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임. 이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사망위로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복 지원을 가능토록 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 됨.

○ 최근 5년간 강남구 사망위로금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본 개정안 가결 시 추가 소요 예산 및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로 본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시행일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강남구 사망위로금 지원 현황]

연도	신청자수(명)	지원자수(명)	중복자수(명)
합계	544	432	112
2021	131	101	30
2022	142	113	29
2023	121	96	25
2024	86	70	16
2025 현재	64	52	12

(자료: 복지정책과)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체계상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에서 사용한 용어(“수당등”, “수급권자”)의 구체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칭 표현 등을 추가하여 용어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같고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u>수당</u> 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2조(수당등 지급의 중지) ----- ----- ----- ----- <u>수당등</u> ----- -----.	제12조(수당등 지급의 중지) ----- ----- ----- ----- <u>위로금,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등”이라 한다)</u> ----- -----.
1. <u>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u>	1. <u>수급권자</u> ----- ----- -----	1. <u>수급권자(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u> ---

소멸된 때	-----	----- ----- -----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2. ----- ----- <u>수당등</u> ----- ----- -----	(개정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